

### 3. 경력평정상의 유의점

#### 가. 휴직기간의 경력평정

##### 1) 10할 평정 대상

-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질병 휴직기간
-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,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
-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
- 육아휴직 및 만 19세 미만의 아동(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)의 입양에 따른 휴직 기간
-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
- 국제기구·해외기관·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 상근으로 근무한 기간

##### 2) 5할 평정 대상

-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한 유학이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위한 유학휴직기간
-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·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휴직기간
- 국제기구·해외기관·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 비상근으로 근무한 기간  
※ 상근이라 함은 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, 비상근은 6~14시간 이하 근무를 말함  
(단, 2000.3.31. 이전에 근무한 자는 1주당 상근 10시간 이상, 비상근은 9시간 이하 근무를 말함)  
※ '94.9.22. 이전에 국제기구·해외기관·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경력기간을 산정함(100% 인정)

나. 직위해제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되나 직위해제 처분사유가 된 징계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 사건이 법원 판결로 무죄 확정된 경우의 직위해제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.

다. 교사채용시험 응시자격 제한 관련 호봉경력 인정 (교직단체지원과-1252, 2004.7.9.)

「교육공무원 누락경력 처리지침」(복지25700-212, 1991.10.5.)에 의거 '교사채용시험 응시자격 위반경력'을 인정함(※ 단, 관할 교육청에 임용 보고된 경력에 한함)

라.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되거나 근무한 경력의 경우 교사는 '가'경력으로, 교감·장학사·교육연구사는 '나'경력으로 평정 한다.(2001.7.7. 개정)

※ 교육공무원 임용전의 병역의무 복무기간은 평정경력기간 20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으로 계산함

- 병역법 및 군 인사법에 의한 군 의무 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 기간 이내에서 병적증명서(주민등록초본 또는 각 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 경력증명서 포함)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 복무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갈음함